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7.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산정 방식과 납부기한을 개선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 후 재임용자의 환수금 산정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명예퇴직자가 공직 재임용시에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3조)

실제 운영에 맞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에 명예퇴직수당 전액이 환수된 자를 포함하도록 함.

다. 재임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납부기한 합리화(안 제8조의5)

명예퇴직 후 재임용자에 대해서도 ‘재임용일’이 아닌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설정함.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정 취소 통지절차 마련(안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시뿐만 아니라 지급결정 취소시에도 취소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동시 개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14. ~ 8.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사람”을 “사람(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을 환수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명예퇴직수당의”를 “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등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때”를 “때 및 제8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임용일”을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임용일”을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 월 수”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미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u>사람은 이를 제외한다.</u>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 ----- ----- ----- ----- ----- ----- ----- ----- ----- ----- ----- ----- ----- ----- ----- <u>사람(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을 환수한 사람을 포함한다.)---</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 고지서(이하 “환수고지

----- 제6조제1항 -----

----- 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등의 통지) -----

----- 때 및 제8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 -----

-----.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
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
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
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
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
항을 준용한다.

1. · 2. (생략)

④ ~ ⑥ (생략)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② (현행과 같음)

(3) -----

--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환
수고지서를 받은 날-----
-----.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6